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368호
----------	------

제출년월일 : 2021. 0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신규 위탁 및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2년 2월에 만료되는 시설 11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위탁 대상 시설 (총 1개소)

연번	시설명 (가칭)	소재지	설치방법	위탁기간	정원 (명)	비고
1	리 슈 빌 어린이집 (가칭)	성북구 보문동1가 60-28번지 (보문 리슈빌 하우트) 2022.03. 준공 예정	공동주택 무상임대	개원일로 부터 5년	41	보문 리슈빌 하우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규 설치 (2022년 6월 어린이집 신규 개원 예정)

※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 (2021.10. 예정)

나. 재위탁 대상 시설 (총 11개소)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현 위탁기간	정원/현원
1	꿈 꾸 는 (박진희)	북악산로 813 (정릉1동)	개 인 (박진희)	2017.03.01. ~ 2022.02.28.	20/18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현 위탁기간	정원/현원
2	꿈 사 랑 (김 현 미)	종암로23길 35 (종암동)	개 인 (김 현 미)	2017.03.01. ~ 2022.02.28.	16/13
3	꿈 초 롱 (소 은 덕)	서경로 31 (정릉2동)	개 인 (소 은 덕)	2017.03.01. ~ 2022.02.28.	20/18
4	라파엘엔젤 (나 이 정)	술샘로24길 15 (정릉4동)	개 인 (나 이 정)	2017.03.01. ~ 2022.02.28.	20/17
5	바 다 (김 인 석)	북악산로 828 (정릉1동)	개 인 (김 인 석)	2017.03.01. ~ 2022.02.28.	20/20
6	사랑샘몬테소리 (김 성 미)	오패산로 46 (월곡1동)	개 인 (김 성 미)	2017.03.01. ~ 2022.02.28.	20/19
7	선 경 (조 영 아)	종암로24가길 53 (종암동)	개 인 (조 영 아)	2017.03.01. ~ 2022.02.28.	20/20
8	자 연 샘 (이 미 경)	한천로101길 18 (장위3동)	개 인 (이 미 경)	2017.03.01. ~ 2022.02.28.	20/20
9	키 즈 맘 (서 경 혜)	북악산로 844 (돈암2동)	개 인 (서 경 혜)	2017.03.01. ~ 2022.02.28.	20/20
10	하 늘 채 (김 미 영)	한천로 509 (석관동)	개 인 (김 미 영)	2017.03.01. ~ 2022.02.28.	20/18
11	혜 연 (이 은 자)	종암로24가길 53 (종암동)	개 인 (이 은 자)	2017.03.01. ~ 2022.02.28.	20/20

1) 위탁기간 : 2022.03.01. ~ 2027.02.28. 예정

2) 위탁심의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결정(2021.11. 예정)

다. 위탁 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근거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